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India Supreme Court Rules for Taxpayers in software Royalty Case

인도: 소프트웨어 로열티 관련 대법원 판결

인도 대법원은 최근 20년 간 이어온 소프트웨어 로열티 건에 대해 납세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RF Nariman, BR Gaval, Hrishikesh Roy 로 구성된 3인 합의체는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IBM India, HP India, Mphasis, Sonata 소프트웨어, GE India 등 100여 곳에 달하는 인도 내 소프트웨어 수입업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거주자가 국외(cross-border)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에 관련된 것으로 비거주자가 수취한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i.e, 로열티 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소프트웨어 판매 시, 내장된 프로그램이 최종 사용자(end-user)에게 라이선스(허여)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은 로열티에

삼성 KPMG

TAX 6 본부

10 May 2021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인도법인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지적재산권(IP) 또는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도법인이 소프트웨어 구매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소프트웨어 판매자의 로열티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이 경우 로열티 지급액에 대해서 인도 현지에서 원천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기 거래가 라이선스가 아닌 일반적인 판매(nature of a sale) 성격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거주자인 소프트웨어 판매자가 소프트웨어의 소유권(proprietary right)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법인(구매자)의 소프트웨어 사용범위가 재배포 혹은 백업파일 생성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납세자에게 허여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사업소득(business income)에 해당하며, 판매자(비거주자)가 인도 현지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소득은 과세대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Impact of Covid-19 on Singapore Advance Pricing Agreements

COVID-19 가 싱가포르 정상가격사전승인(APA)에 미치는 영향

APA 관련 IRAS 지침

APA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확실성 및 세무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PA를 통해 다국적기업들은 권한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ies)과 사업운영방식 및 이전가격 정책적용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조건과 가정을 합의하게 되는데, 이번 COVID-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타결된 APA의 합의 조건을 미준수하게 되거나 향후 APA 기간에 대한 기본가정이 유의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20년 9월 싱가포르 과세당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는 APA를 신청 중이거나 이미 체결한 납세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행하였으며, 본 기사는 해당 지침서의 주요 내용 및 주요 권고사항을 다룹니다.

APA 체결완료 건

IRAS는 납세자에게 COVID-19 영향으로 인해 기타결된 APA 합의조건의 위반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그에 따른 영향, 위반/미준수 사유 그리고 향후 조치방안 등을 IRAS에 상세히 통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때 제출되는 정보는 APA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쌍방/다자 간 APA의 경우 상대국가의 과세당국에도 공유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납세자가 APA의 보류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시장 환경에 대한 변화와 대상법인의 경제적 실질의 변경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한 신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VID-19 가 납세자의 사업현황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변경을 야기할 경우, IRAS(그리고 상대 CA)는 APA를 조기종료 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당국은 기존에 적용된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대상법인 실질에 기초한 특수 관계거래 내용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문서화와 COVID-19 영향 전후의 이전가격 정책을 뒷받침하는 경제분석의 구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 가 야기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과세당국별로 회사의 이전가격 정책 및 경제적 실질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이에 따라 많은 다국적기업들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과세분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APA 검토진행 건

IRAS는 APA 검토단계에 있는 납세자에게 COVID-19가 신청대상법인들의 기능적 실질에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다면 IRAS 에게 이를 알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PA 체결완료 건과 마찬가지로, 제출되는 자료 역시 APA 신청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IRAS는 납세자의 APA 신청을 보류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APA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잠재적 이전가격 리스크를 상쇄할 다른 사전조치를 강구하고 더 이상 APA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정밀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APA 갱신 건

IRAS는 납세자들에게 신청대상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확실성이 상당 부분 확보된 이후에 APA를 신청(갱신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국적기업들은 거래당사자 법인들의 기능변경이 단지 일시적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 (예: 사업실적이 향후 개선될 것인지)해야 하고, APA 신청을 연기하는 것이 나올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COVID-19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예: 사업운영 방식이 유의하게 변경되고 COVID-19 이전의 상태로 회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된다면, 거래 당사자들의 경제적 실질을 재정의하고 기존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조건이 거래당사자들의 기능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경제분석을 수행하여 거래당사자들의 새로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정책을 재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항

COVID-19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결과, 특히 비교가능 회사들의 수익성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을 사용한 결과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COVID-19가 APA 신청서상 제안되었거나 이미 합의된 이전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납세자는 IRAS와 APA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COVID-19 영향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분석에는 법인의 기능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COVID-19 전후), COVID-19 대응조치, 정부규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COVID-19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특수관계거래 약정의 이행 그리고 정상가격 결정(예: 시장상황 비경상적 비용, 정부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타 요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납세자는 IRAS 및 관련 CA에 잠재적인 조정 제도 또는 경제분석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COVID-19으로 인한 매출 감소, 설비 가동률 저하 등 분석대상법인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과거 재무성과에 기초한 분석이나 제3자 경쟁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싱가포르에 발행된 지침서에 따르면 IRAS는 term-testing (예: 분석대상법인의 다년간 영업실적을 비교가능회사/계약의 다년간 영업실적을 비교하는 방식), 영업손실을 기록한 비교가능회사의 선정허용 등 경제분석 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납세자들이 기존 APA 합의안 또는 제안된 이전가격 정책을 계속 적용하고자 한다면 위에 기술된 COVID-19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2. 관세 Update

영국-베트남 FTA 공식 발표, 한국산 직물 교차누적 조항 포함

한국산 직물에 대한 교차누적 조항이 포함된 영국-베트남 FTA가 5월 1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2020년 8월 베트남-EU FTA가 발효되었으나, 영국의 EU 탈퇴로 지난해 12월 베트남은 영국과 별도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국-베트남 FTA에서도 EU-베트남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직물에 대한 교차누적 조항이 포함된 점입니다.

EU-베트남 FTA에서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의류제품 생산 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직물은 베트남산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교차누적 조항의 시행은 한국과 베트남간 '원산지 누적 증명 상호협조 교환각서 체결'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하며, 약 4~5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 OECD Update

KPMG International's Comments on BEPS Action 14: Making Dispute Resolutions Mechanisms More Effective – 2020 Review

배경

2020년 11월 18일 OECD에서 BEPS Action 14의 최소기준을 (Minimum Standard) 상향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8가지 제안을 발표함.

- **Proposal 1: 쌍방 APA 활성화**
- **Proposal 2: 국제조세 관련 세무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 제공 확대**

- **Proposal 3: 적격한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호합의절차 신청에 필요한 표준화된 필수서류 정립**
- **Proposal 4: 체약국은 상호합의절차 사안이 계류 중인 기간에 대하여 세액의 징수유예**
- **Proposal 5: 상호합의절차 결과에 따른 가산금과 가산세 일치화**
- **Proposal 6: 모든 MAP 합의/체결 이행을 보장하기위해 적절한 법적 체제 도입**
- **Proposal 7: 신고한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반복되는 이슈를 MAP을 통해 다년에 걸쳐 해결**
- **Proposal 8: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보장하고자 MAP 중재 또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도입**

하단은 이러한 OECD의 공문에 대한 KPMG International의 의견을 서술하고 있음 (2021년 1월 8일 발표).

8가지 제안에 대한 KPMG International 의견 개진

- **Proposal 1: 쌍방 APA 활성화**

KPMG International은 APA를 Action 14 최소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함. 하지만, 몇몇 과세당국의 경우, APA를 진행시키는 것에 대한 자원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례에만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함.

- **Proposal 2: 국제조세 관련 세무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 제공 확대**

KPMG International은 적절하지 못한 과세조정이 MAP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경험하였음. 따라서, KPMG International은 MAP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세조정을 제안하기 전, 세무조사 담당자와 과세당국간의 협의를 필수화 하기를 제안함.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세무조사 담당자는 과세조정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고 불필요한 MAP을 줄일 수 있음.

또한, KPMG International은 과거 조세조약 체결 국가간 특정 거래에 대한 분쟁이 MAP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있음에도,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간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일방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를 드물게

발견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경우 소송 등 추가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함. 따라서, KPMG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와의 동일한 거래에 대한 분쟁이 MAP을 통해 해소된 경우,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조정을 철회하는 것을 제안함.

또한, KPMG International은 MAP 사례를 제한적으로 경험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목적,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 및 과세조정을 위해 세무조사 담당자가 이미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여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세무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 제공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 **Proposal 3: 적절한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호합의절차 신청에 필요한 표준화된 필수서류 정립**

KPMG International은 MAP신청을 위해 필요 조건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첫번째로, 최소기준은 MAP이 이전가격 조정 및 손금불산입 등 국가간 이슈로 이어질 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해야함.

두번째로, 과세조정을 하는 과세당국에게 조약 통지 조항 (treaty notification provision)은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과세조정을 한 과세당국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MAP이 거절되어서는 안됨. (몇 국가는 MAP은 과세조정을 한 현지 과세당국에게 조약 통지(개시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주장). 하지만, 조약 통지 조항의 목적은 과세조정을 하지 않은 과세당국이 잠재적인 MAP에 대한 인지를 하게 하기 위함. 따라서, 과세 조정을 실행하는 국가에게 통지를 할 이유가 없음.

세번째로, MAP은 관련 조약에 의거하지 않은 과세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MAP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됨.

MAP개시에 필요 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에서 MAP 신청 시 도움을 줄 수 있음.

MAP 신청 가능 상황을 확실하게 정의하여야 함.

- **Proposal 4: 계약국은 상호합의절차 사안이 계류 중인 기간에 대하여 세액의 징수유예**

KPMG International은 동 제안에 동의하며 세액 납부 전 현지국가 차원에서 처리 방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 제안이 적용되어야 함.

▪ **Proposal 5: 상호합의절차 결과에 따른 가산금과 가산세 일치화**

본 Proposal은 MAP 타결 결과로 확정된 이전가격 조정금액과 비례하지 않는 가산세 및 벌금을 부과하는 일부 국가에 대한 것으로, OECD는 이러한 국가들에 대하여 MAP 결과를 고려한 가산세 및 벌금을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다만 이미 많은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영향을 받는 국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KPMG International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과세당국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가산세에 대한 협상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함.

▪ **Proposal 6: 모든 MAP 합의/체결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체계 도입**

MAP의 합의/체결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시간적 제약이 MAP 체결 이행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함.

▪ **Proposal 7: 신고한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반복되는 이슈를 MAP을 통해 다년에 걸쳐 해결**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KPMG International은 동 제안에 동의함.

또한, 몇 국가는 APA에 대한 rollback을 허용하지 않으며 허용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거나 MAP의 대상이 되는 연도가 rollback 날짜와 겹칠 시, rollback이 허용되지 않고 추후 연도에 대한 MAP 신청이 개별적으로 필요함.

▪ **Proposal 8: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보장하고자 MAP 중재 또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도입**

KPMG International은 MAP 중재 방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하지만, 단순히 중재 방안을 최소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따라서, 중재 연장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여 중재가 필요한 국가가 불필요하게 기한을 연장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중재 방안이 정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OECD 차원의 프로토콜 등을 통해 유연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몇 개발도상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감안하여 해당 개발도상국에게 중재 방안 도입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4. 국제조세 Update

국제조세 최신 예규/판례 조심 2020 중 0706, 2021.03.29

처분개요(과세처분취소)

쟁점① - 기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스크랩 매각이익을 자산의 무상증여로 보아 익금산입한 소득금액을 쟁점사전승인 내용에 따라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거부한 쟁점거부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② - 기한급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중국 자회사의 감사보고서상 매출과 스크랩 매각이익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연도에 대해서 재계산하여 각 경정·고지한 쟁점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①

쟁점①에 대해서는 중국 자회사의 임가공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매각이익을 중국 자회사에 귀속시키되, 청구법인이 지급할 임가공용역 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점, 쟁점사전승인신청 단계부터 중국 자회사에 의뢰한 임가공 거래와 스크랩 거래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거래이므로 쟁점사전승인의 대상거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국세청에 충분히 설명한 점, 쌍방APA 대상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총원가가산율 계산시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 제공한 원자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비용 및 스크랩 매각 등이 모두 EBIT 및 총원가에 포함된 점, 국내에서 스크랩 매각이익이 쟁점사전승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국내에서 이중과세를 부담지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전승인에서 쟁점금액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쟁점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국 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사항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청구법인)간 거래금액 및 스크랩 매출금액 등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하여 쟁점금액을 계산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초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감사보고서상 중국 자회사의 매출과 스크랩 매각이익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706(
2021.03.29).pdf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